

2021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



2021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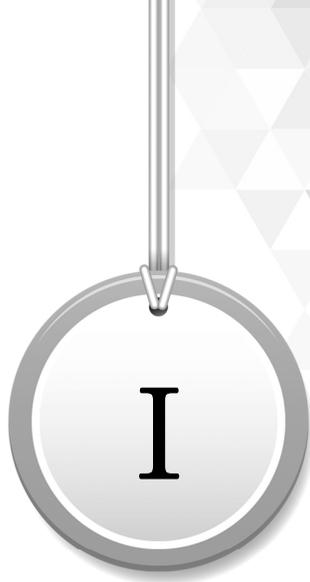
통일부
통일교육원



목 차



I.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1
1. 수립 배경	3
2. 추진 경과	4
II. 현황	5
1. 2020년 평화·통일교육 현황	7
2. 2020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12
3. 2020년 평화·통일교육 평가	14
III. 추진 방향	15
1. 2021년 추진 방향	17
2. 평화·통일교육 정책과제 목록	19
IV. 정책과제	21
1.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23
2. 사회 평화·통일교육 확대	29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36
4. 평화·통일교육 국민의식 제고	41
5. 평화·통일교육 콘텐츠 및 조사·연구	45
6. 평화·통일교육 체험공간	52
7. 글로벌 평화·통일교육	54
V. 협조·요청사항	59
1.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실시	61
2. 통일교육주간 참여	63
3. 지방자치단체·교육훈련기관 평화·통일교육 강화	64
VI. 부록	65
1. 2020년 통일교육 통계	67
2. 2021년 통일교육 예산	69
3. 통일교육 법령	70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I.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1 수립 배경

- 통일교육의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을 체계적으로 제시
 -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법 제6조)
 - * △기본원칙, 추진목표, 방향 △국민의식 제고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교원의 통일교육 전문성 강화 △통일교육 교재 개발 △통일교육 단체 지원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 △시설·장비 확충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계획을 포괄하여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제시
 - 법은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의무화(법 제5조 제3항)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은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의 협조를 규정(시행령 제3조의2)

< 통일교육기본계획 관련 규정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추진 경과

- 통일부는 법에 따라 2000년도부터 2018년까지 연 단위 통일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
 - 각 기관별 통일교육 계획을 종합하여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배포
 - * 미발간 연도 : '02년, '04년, '07년, '15년
- 2019년부터 기본계획의 체계와 구성을 개편하여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발간('19.3월)
 - 범정부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7개 정책과제 - 33개 세부추진과제별로 종합·정리
-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에 따라 세부추진과제를 「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으로 수립
 - *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 「2021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 수립 경과
 - '20.12.8. (통일부 → 관계기관) 작성 지침 통보 및 작성 요청
 - '21.1.8. (관계기관 → 통일부) 각 기관 계획 제출
 - '21.2.17~22. (의견 수렴) 「통일교육 정책자문회의」 상정 및 논의
 - '21.3.5. (통일부 → 관계기관) 시행계획 통보



현 황

II. 현황

1 2020년 평화·통일교육 현황(통일부)

①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지속·확대

□ 평화교육 확산

- 각 급 학교, 지역사회, 공공부문 등 평화·통일교육 확산
 -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이 정착되었으며, 통일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각 기관과 사회 전역에 확산
 - 「평화·통일교육 학술회의」, 「정책자문회의」, 「민관발전협의회」 등의 개최를 통해 다양한 관계자들과 평화·통일교육 심화
- 「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 수립
 - 7개 정책과제 - 32개의 세부추진과제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평화·통일교육 추진
- 제8회 통일교육주간(‘20.5.18.~5.24.) 개최
 - 코로나19 상황에 신속 대응, 범정부교육주간 최초 「온라인 페스티벌」로 개최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면 비대면 행사에 청소년, 전문가, 교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진행

□ 평화·통일교육 양적·질적 역량 제고

- 대내·외 교육 대상 확대 및 다변화
 - (초청교육) 각 분야 최고책임자, 공직자, 교사, 통일·종교단체, 2030 차세대 및 DMZ 평화의 길 평화해설사 등 교육과정 운영
 - (사이버교육) 사이버통일교육 6대 과정(공공, 교원, 2030과정, 시민, 방북, 경남교육청) 운영, 약 44만 명 이수
 - (글로벌교육) 해외신진학자 커뮤니티 활성화로 글로벌 평화·통일 네트워크 확산, 해외신진학자 화상세미나 개최(28개국 47명 참가)

- 체험·소통에 중점을 두어 교육 과정 개편 및 운영
 - △평화·통일, 평화경제분야 교과목 의무 배정 △모의 남북회담·세미나,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분임 토의·발표 등 참여·소통형 원격수업 실시 △교육생 수요·만족도를 반영한 커리큘럼 운영
- 인기 TV 프로그램과 협업 확대, 통일교육 영상의 인지도·활용도 제고
 - △선을 넘는 녀석들(MBC) △방구석 1열(JTBC) △건축탐구 집(EBS) △다큐 잇it(EBS) △신비아파트(CJ) 등
 - * MBC <선을 넘는 녀석들> 시청률 △4·19 특집편 6.9%(평소 시청률 3~4%대) △6·25 특집편 4.5%(평소 3~4%대) 등

2] 분야별 평화·통일교육 지원

□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 (초·중고 통일교육) 교육방식 변경, 비대면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 능동적 대응
 - ‘통일 리더캠프’, ‘학교통일 체험교육’,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등을 비대면 행사로 전환, 전년 대비 교육 실적 증가
 - * 통일 리더캠프 : '19년 37회 → '20년 73회, 학교통일 체험교육 : '19년 72개교 → '20년 255개교, 찾아가는 학교통일 교육 : '19년 1,124회 → '20년 1,038회
 - 비대면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맞춤형 콘텐츠 개발·활용
 - *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강의 동영상(10종) △국내 리더캠프 사전교육용 동영상, 체험 콘텐츠(AR 스토리텔링) △온라인 통일 체험 콘텐츠(VR) △통일 스토리텔링 교육을 위한 ‘평화·통일 현장체험 안내서’발간 등
- (대학 통일교육) ‘통일교육 협력대학’ 신규 선정 등을 통해 대학 통일교육 기반 확충
 - △6개 신규 선도대학 선정 △7개 대학과 ‘통일교육 협력대학’ 업무협약 체결 △53개 대학과 ‘대학생 통일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 등 실시
 - * 협력대학(7개) : 광주교대, 아주대, 부산대, 인천대, 한신대, 서울대, 충남대

□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

○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

-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통일교육을 주도할 통일교육 위원 위촉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제22기('20.5~'22.3) 통일교육 위원 710명 위촉

-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체계를 기존 17개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7개 권역 단위로 개편,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대면·비대면 평화·통일 교육 실시

* 7개 권역 : 서울, 경인,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

** 통일강좌 등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234,607명 지역주민 대상 교육

○ 전국 11개 지역 통일관 및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복합 교육공간으로 조성

- VR(가상현실) 통일체험·남북 전래놀이 체험·온라인 이벤트 등 비대면 중심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인천 통일관 리모델링 △통일관 전시 패널 교체 지원 및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장비 보급 △오두산 통일전망대 기획 전시(연 3회) 등 개최

* 통일관 관람 377,391명('20년), 통일체험 프로그램 참여 25,370명('20년)

□ 민간·공공 부문에서의 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 사회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 △사회단체 △종교기관 등과 MOU 체결을 통해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 (공공 통일교육 거버넌스) △국립대·사립대 평생교육원 협의회 △국가·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 도시 등과 통일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민간 통일교육 거버넌스) △종교계 △주요 사회단체 등과 업무협약 체결

□ 분야별·세대별 맞춤형 교육 지원

- 공공부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안정화
 - '19년부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대상 공공부문 통일교육 본격 실시
 - * 연도별 교육 실적: '19년 약 67만 명, '20년 약 88만 명
 - '찾아가는 공공 통일교육' 시범 실시를 통해 직접 교육 지원
 - 원활한 공공 통일교육을 위해 사이버콘텐츠 요청 기관에 적기 제공
 - *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에 사이버 콘텐츠를 제공,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19년 48개 기관 → '20년 114개 기관)
- 자발적 참여, 수평적 대화를 중시하는 2030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흥미 △소통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30세대와 함께하는 △참여형(평화·통일 아이디어 콘테스트) △쌍방향 소통형(평화·통일 피우지(P-UZY) 아카데미) 사업 추진

③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자료 개발·보급

□ 평화·통일교육 콘텐츠 다변화

- 다양한 소재의 시리즈 도서 개발 및 디자인 개선·고급화
 - 전문출판사와 협업, △인문학 시리즈 도서 『손안의 통일』 시리즈 (5종) △명사들의 『평화·통일 특강』 △청소년 평화교육 워크북 『평화, 나날이 한 걸음씩』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는 『세계 질서의 변화를 읽는 7개의 시선』 △『평화로 가는 사진여행』 등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 확대 등 영상 수요가 급증, 교과 연계형 클립영상 다수 제작
 - △신규 클립영상 제작(4편) △교육부 남북하나재단 등의 콘텐츠 중 클립영상에 적합한 콘텐츠를 활용 재제작(74편) 등
 - * △전년 대비, 3.5배 이상 제작·배포('19년 21편 → '20년 78편) △교사용 『클립 영상 활용 가이드』도 제작·배포

□ 사이버 평화·통일교육 확대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증가하는 사이버교육 수요에 선제적 대응, 교육 이수자 수 역대 최고치 기록(약 44만 명 이수, 전년 대비 2배 증가)
 - 사이버 강좌 정원 확대(500명→1,500명) 및 콘텐츠 다양화(10과목→16과목)
 - △이 달의 추천과목 △사이버교육 스테디셀러 △입문·기초·심화 단계별 '내게 딱 맞는 커리큘럼' 등 구독경제 개념을 차용하여 강좌 운영, 2030세대의 유입 확대
 - * 수요자 선호 고려 매체 다양화 : △유튜브를 교육채널로 활용 △클립영상 △사이버강좌 영상 △2030세대용 교육 자료 △웹 토크 등 신규 콘텐츠 탑재
-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 진행
 - 교육 교재 및 사이버강의 등에 대한 선호도와 수요 조사,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 진행
 - * △통일교육주간 인증 이벤트 △창작 통일동요 공모전 이벤트 △사이버강의 학습 완료 이벤트 △내가 만드는 통일교육 콘텐츠 등

< 2020년 통일교육원 교육과정별 통계 >

교육과정		교육인원(명)
원내과정	전문과정	256
	공직자통일교육과정	1,410
	학교통일교육과정	341
	사회통일교육과정	367
	글로벌 통일교육과정	47
	특별교육과정	257
사이버통일교육과정		442,377
원외교육		393,723
계		838,778

2 2020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통일부는 교육부·교육청의 협조 하에서 매년 초·중·고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실태조사 실시(법 제8조의4항)

< 2020년 학교통일교육 학생·교사 실태조사 >

- 초·중·고 통일교육 실태 조사(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 '14년부터 실시, 교육부·교육청 협조)
 - (대상) 초중고 670개교, 총 73,851명
 - 학생(68,750명) : 초 17,330명(5·6학년), 중 25,154명, 고 26,266명(95% 신뢰수준±0.74%)
 - 교사(4,045명) 및 관리자(1,056명) : 초등 담임 중등 사회도덕역사 교사 등(95% 신뢰수준±1.52%)
 - (시기·방법) '20.11.2 ~ 11.30, 온라인 조사(통일·북한·평화 인식 등 20여개 문항)
 - (조사기관) 현대 리서치연구소

2 조사 결과

【학생】

- 북한인식 : '협력'(54.7%) > '경계'(24.2%) > '지원'(8.4%) > '적대'(8.2%)
- 평화인식 : '평화롭지 않다'(35.2%) > '평화롭다'(17.6%)
 - * '평화롭지 않다'는 '18년 이후 증가 : ('18) 15.5% → ('19) 33.7% → ('20) 35.2%
 - * '평화롭다'는 '18년 이후 감소 : ('18) 36.6% → ('19) 19.0% → ('20) 17.6%
- 통일인식 : '필요하다'(62.4%) > '불필요하다'(24.2%)
 - * '필요'는 '18년 수준으로 회복 : ('18) 63.0% → ('19) 55.5% → ('20) 62.4%
 - * '불필요'는 '18년 이후 증가 : ('18) 13.7% → ('19) 19.4% → ('20) 24.2%
- 통일과 평화 : '남북이 평화롭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 동의(57.7%) > 비동의(37.2%)
- 통일교육 : '경험있다'(78.6%) > '경험없다'(21.4%)
 - * '경험있다'는 '18년 이후 소폭 감소 : ('18) 79.9% → ('19) 79.5% → ('20) 78.6%
 - * '경험없다'는 '18년 이후 소폭 증가 : ('18) 19.7% → ('19) 19.8% → ('20) 21.4%

【교사】

- 북한에 대한 생각 : 협력(84%) > 경계(8.5%) > 도와줘야(4.4%) > 적대(1.9%)
- 평화 인식 : 평화롭지 않음(38.5%) > 평화로움(21.9%)

- 통일 필요성 : 필요(87.9%) > 불필요(9.3%)
- 통일과 평화의 관계 : '평화롭게 지내면 통일 불필요'
 - 비동의(49.8%) > 동의(47.5%)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점 부분 : 사회적 공감대 조성(86.7%) > 교수 학습 자료 개발(82.6%) > 교사의 전문성 향상(70.7%) > 교과서 개정(67.9%) > 관련 법, 제도 정비(67.5%)
 - ※ 교사의 북한 분단·평화 인식 영역 '20년도 신설

【평가】

- '19년 급감했던 북한인식('협력·지원'), 통일인식('통일필요성')은 교착상태 장기화·통일교육 효과 등으로 회복
 - * 북한인식('협력·지원') ('18) 63.0% → ('19) 52.0% → ('20) 63.1%
 - * 통일인식('통일필요') ('18) 63.0% → ('19) 55.5% → ('20) 62.4%
- '19~'20년 상반기 미사일 발사, 하반기 연락사무소 폭파(6월), 서해 피격 사건(9월) 등은 한반도 평화인식을 지속 하락
 - * '평화롭지 않다' : ('18) 15.5% → ('19) 33.7% → ('20) 35.2%
 - 다만, 다수(57.7%)가 '평화롭다면 통일 불필요'라고 답변하여 높은 평화수요를 확인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학교통일교육 수준 유지(78.6%)
 - 학교현장에서는 '남북 간 평화', '통일 이익' 등 다양한 통일교육 실시

3 2020년 평화·통일교육 평가

□ 성과

-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원내외 평화·통일교육 체계적 추진
 - △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및 『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을 토대로 평화·통일교육 심화 △ 『평화통일교육연구센터』 개소 등
- 코로나19 상황에 신속 대응, 교육 공백 방지 및 대내외 교육 확대
 - △ 「제8회 통일교육주간」 전면 온라인 개최 △ 사이버통일교육 확대 △ 「비대면 통일교육 활성화 매뉴얼」 제작·보급 등 성과 도출
 - △ 공직자, 교사, 단체, 최고경영자, 차세대 등 교육 과정을 집합 또는 온·오프라인 병합 방식으로 운영 △ 해외신진학자 화상세미나 개최(28개국 47명 참석)
- 지역사회·학교·공공부문 등 대상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 △ 7개 권역 ‘지역 통일교육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 △ 통일 문화 공간으로서 통일관 운영 △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추진*
 - * 교육기관·종교기관·주요 사회단체 등 13개 기관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비대면 콘텐츠·체험 프로그램 활용, 초·중·고 통일교육에 능동적 대응 및 ‘통일교육 협력대학’ 신규 선정 등을 통해 대학 통일교육 기반 확충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대상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시(20년 결과 약 88만명 이수)
- 평화·통일 콘텐츠 신규 18종 61개(도서 23개, 영상 36개, 강의안 2개) 제작 등 다양한 교재 개발 및 배포

▲ 도서 『2020 손안의 통일』 시리즈, 『세계질서의 변화를 읽는 7개의 시선』, 명사 『평화통일 특강』, 시진에세이, 평화 워크북, 통일 그림동화 『마법의 구슬』, 『판문점 해설서』 영문판 등 ▲ 방송 애니메이션 『신비 아파트』·JTBC 『방구석 1열』·MBC 『선을 넘는 녀석들』·EBS 『건축탐구 집』·『다큐 잇』, 웹툰 『굿 피스 시즌 2』 ▲ 신규 사이버 콘텐츠 15편 ▲ 기타: 평화통일커피, 평화다이어리 등

□ 보완사항

-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시에도 원활한 통일교육 운영을 위한 체계 확립
-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및 사회통합형 통일교육으로 외연 확대



추진 방향

III. 추진 방향

1 2021년 추진 방향

- 평화·통일교육 확산 및 사회통합형 통일교육으로 외연 확대 추진
 - 지속적인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관용도와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통합형 통일교육 방안 모색
 - 제9회 통일교육주간(5.24.~5.30.) 계기 △평화·통일교육 성과를 점검하고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개선 사항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 △사회통합 지향 통일교육에 대한 담론 형성 및 교육 현장 의견 수렴 추진
 - △평화·통일 및 사회통합 관련 교과목(강좌) 개발 △평화·통일 및 사회통합 관련 콘텐츠·교구재 등 개발 △「평화통일교육연구센터」 주관으로 관련 연구 활동 및 학술회의 등 개최
- 초·중·고 및 대학 등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 △통일부·교육부·시도 교육청 등 기관 협업 강화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제작 확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노력 지속
 - △선도대학 사업 등 대학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강화 △대학생 통일 특강 및 체험활동 지원 △대학 통일교육 논의 활성화
- 지역사회 통일교육 다원화 및 저변 확대
 - 공공·민간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 통일교육 관련 공공·민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대면 교육방식 외에도 비대면 교육방식의 스마트·온라인 사회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확대를 통해 교육방식 다변화 모색
- 공공부문 통일교육 내실화
 - 공공부문 통일교육을 통해 공직사회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추진
 - 관련 법에 따라 효과적인 공공부문 통일교육 방안 모색

I
II
III
IV
V
VI

o 2030세대의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차세대 전문가 양성

- △‘참여·소통’을 선호하는 2030세대 특성을 반영한 통일교육 확대
△다수의 2030세대가 참여하는 사회통합형 통일교육 추진
-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노출 확대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2030세대 관심 및 공감 제고
- 2030세대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남북교류협력 대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차세대 통일전문가과정」 신설·운영

o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 「DMZ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 추진 등 평화·통일 운동 활성화
- 오두산 통일전망대 문화행사(음악회·연극 등) 개최 등 문화·예술과 연계한 평화통일 체험 확대
- 지역의 통일교육 문화 확산 및 공감대 제고를 위해 지역 통일관 체험 프로그램 방식 다변화 및 운영 확대

o 사이버 통일교육 내실화 및 질적 성장

- 최근 이룩한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 개선
 - * △교육과정별 맞춤형 사이버 콘텐츠 개발 △고객 지향형 사이버 교육 과정 운영 △뉴미디어 콘텐츠 개발 확대 등

o 다양하고 창의적인 영상·도서 제작 확대

- 환경·문학·경제 등 다양한 소재의 시리즈 도서 개발 확대
- 대상별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영상 콘텐츠 지속 개발
 - * 평화·통일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문학·문화적 요소 가미
 - * TV 예능 특집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클립영상, 웹 콘텐츠 등 형식도 다양화

o 글로벌 통일교육 및 평화·통일 담론 확산

- 평화·통일 분야 해외 석학 초빙으로 평화의 관점에서 통일담론 확산
- 국내외 교육·장학프로그램과의 연계과정 운영을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 △국립국제교육원 GKS 장학과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연세대 등

2 **평화·통일교육 정책과제 목록**

정 책 과 제		소관
1.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1-1. 학교 평화·통일교육 기반 강화		
1. 학교 평화·통일교육 협업체계 강화		통일교육원(학교통일교육과)
2.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노력		교육부·교육청
1-2. 학생 평화·통일 인식 제고		
1. 학생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통일교육원(학교통일교육과)
2. 학생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교육청
1-3. 대학 평화·통일교육 기반 조성		
1. 대학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통일교육원(학교통일교육과)
2. 대학생 체험활동 및 통일 논의 활성화		통일교육원(학교통일교육과)
2. 사회 평화·통일교육 확대		
2-1. 공공부문 평화·통일교육		
1. 공공부문 통일교육 내실화		통일교육원(사회통일교육과)
2. 분야별 맞춤형 통일역량 강화		교육훈련기관
2-2.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1.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기반 구축		통일교육원(사회통일교육과)
2.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추진		지방자치단체
2-3. 2030세대 평화·통일교육		
1. 2030세대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교육원(사회통일교육과)
2-4. 부문별 평화·통일교육		
1. 평화·통일교육 부문별 거버넌스 구축		통일교육원(사회통일교육과)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3-1. 핵심 전달자 역량 제고		
1. 교원 연수		통일교육원(교육연수과) 교육부·교육청
2. 공직자 통일역량 강화		통일교육원(교육연수과)
3-2. 전문가 양성 및 파급력 제고		
1. 세대별·분야별 전문가 양성		통일교육원(교육연수과)
2. 사회지도층을 통한 파급력 제고		통일교육원(교육연수과)

I

II

III

IV

V

VI

정 책 과 제	소관
4. 평화·통일교육 국민의식 제고	
4-1. 통일공감 참여형 문화행사	
1. 통일교육주간	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
2. 지역별 통일공감대 행사	지방자치단체
4-2. 통일공감 온라인 홍보	
1. 온라인 매체를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교육원(연구개발과)
5. 평화·통일교육 콘텐츠 및 조사·연구	
5-1. 콘텐츠 개발	
1. 출판물	통일교육원(연구개발과)
2. 영상자료	통일교육원(연구개발과)
3. 강의안 등 기타자료	통일교육원(연구개발과)
4. 교수·학습 콘텐츠	교육부·교육청, 지방자치단체
5-2. 이러닝 개발	
1. 사이버강의	통일교육원(연구개발과), 교육부
5-3. 평화·통일교육 관련 조사·연구	
1.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통일교육원(학교통일교육과)
2. 평화·통일교육 학술 연구 지원	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교육청
6. 평화·통일교육 체험공간	
6-1. 복합 평화통일 문화공간	
1. 통일관	통일교육원(사회통일교육과)
6-2. 통일 체험연수 시설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7. 글로벌 평화·통일교육	
7-1. 평화·통일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 해외 전문가 초청	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
2. 평화·통일 글로벌 교류	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 교육부, 교육청
7-2. 글로벌 평화·통일교육 추진	
1. 해외 신진학자 대상 평화·통일교육	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
2. 재외동포·외국인 대상 평화·통일교육	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



정책과제

IV. 정책과제

1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 학생들의 평화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참여·체험형 교육 확대 등 기반 강화 및 평화·통일교육 추진

* 법 규정 사항 : 학교 통일교육 진행(제8조)

1-1 학교 평화통일교육 기반 강화

1-1-① 학교 평화통일교육 협업체계 강화(통일부 통일교육원)

□ 2020년 실적

-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 협의회*에서 사업공유, 통일교육주간 협조, 학교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공동비전(안),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방향 등 논의
 - * △학교 평화·통일교육 정책협의회(교육부 등 8개 기관, 2회) △학교 통일교육 지원협의회(통일부-교육부-교육청, 2회)
 - 각 시·도 교육청 교사들이 참여하는 '학교통일교육 발전워크숍' 추진, 교원 연수 및 평화·통일교육 우수사례 공유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과의 협업 확대 노력
 -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통일교육 실시 및 공동사업 추진
 - * 통일부·교육부 공동사업 :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통일교육주간,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 * 통일부·교육청 협업사업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발전워크숍

□ 추진 계획

-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시 교육 관련 기관과 협업 추진
 - 교육 관계기관과 추진방향, 반영사항 등 논의 및 개정(안) 마련
 - * 교육부,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 교육 현장에서의 평화·통일교육 확산을 위한 협업 강화
 - 평화·통일교육 교재 개발·보급, 교원연수 등 유기적 협조

1-1-②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노력(교육부, 시·도 교육청)

□ 2020년 실적

-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
 -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 강화 △교원 전문성 제고 △학생 평화 통일 공감대 확산 △지원 및 협력 체제 구축 등을 통해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통일교육 교사지원단·강사단 운영 등
 - * 대표사례: (교육부) 평화통일교육 우수 실천사례 공모, 교사연구회 운영, 시도별 교육청 자율기획워크숍 등
- 각 급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운영
 - 학교 현장에 맞는 평화·통일교육 운영 계획 수립, 통일공감대를 확산하는 체험 중심 및 학년간의 연계성 있는 교육 운영
 - * 대표사례 : △(전라남도교육청) 찾아가는 통일전시회 △(경기도교육청) 「공감 학교통일교육」 사업 △(광주광역시교육청)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박람회 등
 - 교육청 협조로 각 급 학교에 도덕, 사회, 역사 등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10시간 이상(교과 4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6시간) 운영 권장
 - * 각 시도 교육청, 통일교육주간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실시
 - * 대표사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단위학교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10시간 이상 반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과정 연계 통일교육

□ 추진 계획

- 학교 정규 교육과정 기반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 △사회/도덕 교과(군)를 비롯하여 국어,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가정 등 다양한 교과(군)에서 평화·통일교육 수업 실시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체험·참여 프로그램 운영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
 -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및 자유학기제 활동과 연계한 교육 실시 권장, 통일교육주간 계기 집중 및 자율 운영
 - * 대표사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 통일한마당 대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통일동아리 선도학교 운영 등 학생 참여와 체험 중심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 시행 및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교실 속 평화·통일 이야기 한마당

1-2 학생 평화·통일 인식 제고

1-2-① 학생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통일부 통일교육원)

□ 2020년 실적

- 학교 평화·통일교육 모델의 개발과 확산 노력
 - 진로체험형 과제와 연계된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23개교) 및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개최,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1,038개교) 지원
- 온·오프라인 참여·체험형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통일체험교육 경비지원(250개교) △통일리더캠프(온라인 60회, 오프라인 12회) △어린이기자단(203명) △청소년 평화·통일문화 경연대회 등
 - 학생들이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고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제작할 수 있는 '평화 크리에이터' 운영, 영상 등 제작 지원
- 평화·통일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지원
 - △교구재(통일 스토리텔링) 및 온라인 통일 체험 콘텐츠(VR) 제작 및 보급 △체험교육 컨설팅 우수 사례집 제작 △평화·통일 현장체험 안내서 발간 등

□ 추진 계획

- 코로나 상황 고려, 참여·체험형 평화·통일교육 운영방식 다양화
 -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한 다양한 체험교육 운영
 - * 온라인 체험콘텐츠 및 연구대회 입상작을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예시 제공
 - 접경지역 탐방 등 평화·통일 현장 체험교육 다양화
 - * '평화·통일 현장체험 안내서'(전국 30개 현장체험 코스 수록) 배포 예정
- 학교 평화·통일교육 모델의 개발과 확산 노력 지속
 - 「지역사회 주도형 평화·통일교육 수업 모델 개발」 과제와 연계된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1-2-② 학생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교육부, 시·도 교육청)

□ 2020년 실적

○ 학생 통일공감대 확산 프로그램 진행

- 평화·통일 주제 현장체험 프로그램, 가족단위 체험캠프, 사제동행 프로그램, 평화·통일이야기 한마당,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등 추진

* 대표사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 현장체험학습 △(강원도교육청) 청소년 평화이야기 마당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가족 역사·통일 체험 캠프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 감수성 향상 온라인 토론 연극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초중등 통일한마당

○ 통일동아리 운영 선도대학 지원

- 학생 체험 중심 통일동아리 운영, 탐구·조사·공연·캠페인·축제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지도 교사 대상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대표사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제동행 통일동아리 활동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 동아리 운영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통일동아리 선도학교 운영, 통일역량 함양교육 실시

○ 교육청별 특별 프로그램 진행

* 대표사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실 속 평화축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찾아가는 평화사진전 순회 전시 △(경기도교육청) 「공감 학교통일교육」 사업

□ 추진 계획

○ 학습자 주도성 증진, 학교 및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평화·통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교육부 지원) △교실 속 평화축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참여·체험형 토론 연극 △공감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시·도 교육청) △교사연구회(학습공동체) △평화·통일동아리 △교원·학생 국내·외 체험학습 사업 △가족단위·사제동행 캠프 등 체험 프로그램 △학생 평화통일영화제, 교원 평화통일캠프 등

1-3 대학 평화·통일교육 기반 조성

1-3-① 대학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통일부 통일교육원)

□ 2020년 실적

-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역별·기능별 평화·통일교육 거점대학으로 육성·발전
 - 3개 선도대학(19 지정)에 경기대 등 6개 선도대학을 신규 선정(20.2월)
 - * △신규 선도대학: 경기대·서울교대·대진대·충북대·전북대·송실대
 - 비대면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 성과발표회(12.17)
- 신규 「통일교육 협력대학」 지정·운영
 - 7개 협력대학 간의 업무협약 체결(5월~10월)
 - * 협력대학: 광주교대·아주대·부산대·인천대·한신대·서울대·충남대
 - 선도대학과 연계된 학술회의, 간담회, 동영상 제공 등을 통해 대학 통일교육의 외연 확대 및 통일교육 활성화 도모

□ 추진 계획

- 9개 선도대학 사업 지속 추진
 - 선도대학 중간 평가 실시(21.1월 중순)
 - * 평가대상 : 4개 대학(19년 지정 : 강원대·한동대·인제대, '20년 지정 : 송실대)
 - * 평가결과에 따라 '21년 사업비를 차등지원, 실적 부진 대학은 지원 중단 가능
 - ('19년 선정 대학) 연구·강좌사업과 함께 통일교육 프로그램 보급·확산 추진
 - ('20년 선정 대학) 1년차 사업 실적·평가를 바탕으로 2년차 사업의 성과 고양 노력
- 「통일교육 협력대학」 확대 운영 및 운영 내실화 도모
 - 「통일교육 협력대학」을 추가 선정하고 기존 협력대학과 선도대학 간의 간담회·연합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운영 내실화

1-3-② 대학생 체험활동 및 통일 논의 활성화(통일부 통일교육원)

□ 2020년 실적

-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 추진
 - 대학생에게 다양한 통일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6개 대학 53개 통일·북한 관련 특강(21건) 및 정규 강좌(32건) 개설 지원
 - △ZOOM, 구글 클래스룸 등을 활용한 비대면 교수 방법 도입 △강의 내용 다양화로 만족도와 관심도 제고
 - * 통일교육 선도대학, 협력대학들과 연합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대학 평화·통일교육 우수사례 공유 및 평화·통일교육의 발전방향 등 논의
- 대학생들의 자율적 통일활동 지원
 -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를 통해 온라인 통일한국 모의 국무회의 경연대회 개최·통일동아리(7개) 지원·통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전국 4개 권역) △통일논문 및 홍보영상 공모 등 실시

□ 추진 계획

- 대학생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 내실화 추진
 - 55개 강좌 지원(1학기 24개교, 2학기 31개교), 대학 선정 시 비수도권·교육대학·사범대학·신규 진입 대학을 우대하여 대학 통일교육 기회 확대
 -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등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사업(강의, 현장체험)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특히, 현장학습은 현장방문 외에도 운영방식과 형태 등을 다채롭게 구성하여 학교 특성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
 - * 현장방문, 온라인체험, 현장학습 관련 워크숍, 기타 교내 행사 등

2 사회 평화·통일교육 확대

- ◎ 분야별·세대별·지역별 특화된 평화·통일교육 실시 및 공공·민간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사회 평화·통일교육 다원화 및 저변 확대
- * 「통일교육 지원법」 규정 사항 :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제6조의7)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운영(제6조의3) △교육훈련기관의 통일교육 반영(제7조)
 △통일교육협의회(제10조) △통일교육위원(제10조의2)

2-1 공공부문 평화·통일교육

2-1-① 공공부문 통일교육 내실화(통일부 통일교육원)

□ 2020년 실적

- 공공부문 의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20년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적 집계 결과 약 88만 명 교육 참여
 - * '19년 실적 약 67만 명
 -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 신규 제작, 사이버 강좌 확대, 강사풀 제공 △관리시스템 개선
 - * 신규 영상 및 도서 각 3종 제공, 사이버 강좌 46과목 운영, 강사풀 제공
 - 「찾아가는 공공 통일교육」 시범 실시
 - * 총 35개 기관을 선정하여 23개 기관 대상 교육 실시(코로나19 상황으로 일부 기관 미실시)

□ 추진 계획

- 공공부문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 공공부문 통일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 시스템 개선 및 '찾아가는 공공 통일교육' 등 지원체계 강화
 - 관련 법에 따라 효과적인 공공부문 통일교육 방안 모색
- 공공부문 통일교육 콘텐츠 추가 개발 및 제작, 전문강사 신규 양성을 통한 강사풀 제공 확대 등 지원체계 강화

2-1-② 분야별 맞춤형 통일역량 강화(교육훈련기관)

□ 2020년 실적

- 분야별 교육훈련기관에서 신규자, 승진자, 중견리더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규 교육과정 및 특별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 반영
 - 코로나 19 상황 지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교육 중심으로 운영
 - * 대표사례 :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 통일답사기행 『우리지역 온라인 평화기행』, 인문학 통일교육 『분단시대를 건너는 평화의 징검다리』 등 △(강원도인재개발원)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핵심리더과정, 글로벌리더과정 △(경기도인재개발원) 평화통일 기본과정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통일한국의 상상』 과정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핵심인재 통일교육』 3개 과정 △(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승진자 대상 통일교육 관련 7개 과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남북농업협력의 이해』 과정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신규공직자 대상 『한반도 정책의 이해』 과정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통일한국! 한국의 미래 전문교육훈련』 등 5개 과정
- 교원연수원에서 특별과정 운영 및 직무연수, 자격연수, 맞춤형 현장 견학 등에 교과목 편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반영
 - 방역지침을 준수, 대면·비대면 교육 혼합 및 원격교육 적극 활용
 - * 대표사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유·초·중등 통일교육 직무연수·자격연수 등 교육과정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시시각각 원격연수』 운영 △(경기도 교육연수원) 통일역량 강화 직무연수 3개 과정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중등 교감 자격연수 등 8개 과정 △(부산시 교육연수원) 직무연수 『평화통일 융합 수업 설계와 사례 나누기』 과정 △(충청북도 단체교육연수원) 『평화로운 통일세대를 키우는 평화통일교육 직무연수』 △(탐라교육원) 교원 자격연수 교과목에 평화·통일교육 편성 운영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유·초·중등 교사 역량 강화 및 자격연수 과정 △(전라남도 교육연수원) 특별연수 과정·교원 자격연수 과정·교원 생애단계 직무연수과정·남도민주평화길 직무연수에 평화·통일교육 실시

□ 추진 계획

- 평화·통일 관련 교과목 편성 등 지속적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 대비 탄력적 연수 방안 모색
 - 대면·비대면 연계과정 운영, 원격연수 확대, 상황에 따라 현장체험 학습 병행 등 평화·통일교육 실효성 제고
 - * 대표사례 : △(경기도인재개발원) 평화통일 기본과정(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 등) 운영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협력’ 주제 교육과정 운영 △(부산교육연수원) 『인문학과 함께 하는 통일이야기』 등 평화·통일의식 고취 연수과정 운영 △(전라남도 교육연수원) 행정전문리더과정 직무연수 과정에 평화·통일교육 실시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중견리더양성과정·신규임용(후보)자과정 등 운영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신입인재양성·승진지역량 향상 과정·중견리더과정 등에 평화·통일 교과 편성
- 교육대상별 경력, 직급을 고려한 평화·통일교육 연수 과정을 운영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현장 체험 등 다양한 방안 모색
 - 신규교사 대상 직무연수, 1급 정교사·교감 자격연수, 경력교사 상시 연수 등 교육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 대표사례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우리역사 바로 알기』 과정 신설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대상 평화·통일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통일 관련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활동수업 사례 나눔 및 『초등 교실에서 평화통일 수업하기』 원격 연수 등 운영, 『학교장 리더십 아카데미』 평화통일 현장체험, 문화 속 통일 체험 등 추진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 『평화통일교육을 만나다』, 『인문학으로 풀어보는 평화통일교육』, 『역사현장으로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등 통일교육연수 과정 운영

2-2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2-2-①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기반 구축(통일부 통일교육원)

□ 2020년 실적

- 통일교육 위원이 지역사회 통일교육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제22기 통일교육 위원 710명을 위촉, △온·오프라인 연찬반 교육 △온라인 토론회 △접경지 체험 프로그램 실시 △교육경비 지원 등 추진
-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체계를 7개 권역 단위로 개편,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대면·비대면 평화·통일 교육 실시
 - 7개 권역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교육청·학교·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평화·통일교육 사업 추진
 - * 통일강좌 등 599회 개최, 234,607명 참여
- 민간 통일교육 단체 협의체인 통일교육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민간 부문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 △통일교육협의회 주관사업 △74개 회원단체 대상 사업 지원 등 다양한 민간부문 통일교육 사업 실시
 - * 평화·통일교육 실시 201회, 12,377명 참여
 - 민·관·학 합동 온라인 통일문화 플랫폼 구축, 영상 콘텐츠 중심의 '통일공감 평화통일 축제' 개최

□ 추진 계획

- 통일교육위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통일교육 위원이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찬반, 토론회,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지역통일교육센터 협력 강화 및 평화·통일교육의 다양성 확대
 - 세대별·지역별·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을 다원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스마트 교육 프로그램 추진
- 민간부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력 확대
 - 언택트(untact) 방식의 통일교육 플랫폼을 개발, 온·오프라인 통일교육 사업 확대 및

2-2-②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추진(지방자치단체)

□ 2020년 실적

○ 학교·시민 대상 평화·통일교육 사업 실시

- 전문가 강의, 문화공연, 현장체험 등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교육

* 대표사례 : △(제주특별자치도) 2020 평화아카데미 △(대구광역시) 평화를 위한 행복한 나눔 캠페인, 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 기념사업 △(대전광역시) 통일리더십 아카데미, 통일강좌, 한민족통일문화제전 △(인천광역시) 북한과학기술 현황과 남북교류협력 방향 강연회 △(광주광역시) 찾아가는 학교·시민 이동 통일관 △(충청남도) 충남 청소년 열린통일 강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 연계, 평화·통일 관련 워크숍·강연회 등 개최

* 대표사례 :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경상북도) 경북평화통일포럼 △(대전광역시) 우리고장 평화플랜 대전평화로드, 평화통일 공감대회 △(경상북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통일공감대 행사 추진 △(광주광역시)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기원 청년영화제 등

○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평화·통일교육 사업 지원

- 지방자치단체 소재 민간단체 및 시민 대상 사업 지원, 공모사업 추진

* 대표사례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교육 공모사업 △(부산광역시) 지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강원도) 도민공감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경기도) 지역사회 민간 공모사업 지원, 경인통일교육센터 지원 등

○ 세대별·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청년 전문가 양성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강의·문화 공연 추진

* 대표사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 연계 평화통일 소망 이룸터 등 지역자원 활용 평화·통일교육사업 지원,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 시니어 통일아카데미 △(강원도) DMZ 주민 평화통일 역량강화 교육 등 △(경상북도) 경북통일화랑 아카데미 △(인천광역시) 청소년 평화·통일 캠프 등

□ 추진 계획

○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 평화통일 교육 실시 및 지역 통일 전문가 양성

* 대표사례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백두 청년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대학생 평화통일 토론대회 △(경기도) 경인통일교육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경상북도) 통일골든벨 △(인천광역시) 우리통일세대 인천시민 평화통일활동가 양성사업 공모사업 △(대구광역시) 민간단체 통일교육사업 지원

○ 참여와 체험 중심의 시민·미래세대 통일공감대 확산 및 역량 강화 지원

* 대표사례 : △(부산광역시) 시민단체 및 자치구(군) 대상 평화통일교육 사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평화를 부르는 랩페스티벌·창작 퓨전 뮤지컬, 청소년 차세대 통일리더 아카데미 △(경기도) 청소년 대상 접경지역 등 현장체험 △(인천광역시) 서해5도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2-3 2030세대 평화·통일교육

2-3-① 2030세대 통일공감대 확산(통일부 통일교육원)

□ 2020년 실적

- 평화·통일과 관련된 2030세대의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 발굴과 관심 모색을 위한 「2030 평화·통일 아이디어 콘테스트」 개최
 - 지역통일교육센터 예선 및 본선 심사를 통해 평화·통일 관련 우수 아이디어·디자인 기획안을 시상하고, 2030세대와 공유
 - * 대상(통일부장관상 2), 최우수상(경기도 강원도지사상 각 1), 우수상(통일교육원장상 4), 장려상(통일교육원장상 4)
- 2030세대의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2030 평화·통일 공감 아카데미」 운영
 - 4개 권역별로 2030세대 선호도가 높은 평화·통일 관련 사회 저명 인사의 강의 및 2030세대 참여형 포럼 개최
- 2030세대의 시각에서 통일교육 사업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국민 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의 설계·실행·평가 등 사업 전 과정에 국민 디자인단이 참여하여 사업을 내실화

□ 추진 계획

- ‘참여’·‘소통’을 선호하는 2030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개발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
 - 2030세대 대상 흥미·참여·소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 2030세대 및 전문가·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2030세대 통일교육 방향에 대한 전문가·민간단체 대상 폭넓은 의견 수렴 △2030세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문단 운영
- 통일교육주간 등 주요 계기 활용, 2030세대 참여 확대 추진

2-4 부문별 평화·통일교육

2-4-① 평화·통일교육 부문별 거버넌스 구축(통일부 통일교육원)

□ 2020년 실적

- 통일교육의 외연 확산 및 주체·지역·장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 공공 통일교육 거버넌스 : △대학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 도시 등 일반시민 대상 교육기관과 업무협업 체계를 구축, 통일교육 활성화 유도
 - 민간 통일교육 거버넌스 : △종교단체 △자유총연맹·대한변호사회·태권도진흥원 등 주요 사회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민간 차원의 통일교육 확산 모색
- 통일교육 거버넌스의 제도화 및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통일교육원과 주요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 * 공공 : △한국대학 평생교육원 협의회 △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 협의회 △국가 평생교육원 진흥원 △전국 평생학습 도시 협의회 등
 - * 민간 : △대한변호사협회 △자유총연맹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한국태권도진흥재단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추진 계획

- 사회 통일교육 공공·민간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일교육 정착
 - 구축된 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 시스템 제도화
 - * 업무협약 체결 단체를 대상으로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설 유도 및 지원
 -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교육청·학교·민간단체 등과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 사회 통일교육 다원화 및 저변 확대 지속
 - △여성계 △주요 사회단체 등과 평화·통일교육 협업 지속 추진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 ◎ 핵심 전달자의 역량을 제고하여 학교,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차세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평화·통일교육의 전문성 강화
- * 법 규정 사항 :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제9조의2)

3-1 핵심 전달자 역량 제고

3-1-① 교원 연수(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부, 시·도 교육청)

□ 2020년 실적

○ 교원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

- 교원 대상 통일교육원 원내교육 및 사이버교육 확대를 통해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제고에 노력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학교 현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 중등 교사반·교장반, 초등 교사반·교장반 등 18회 341명 대상 통일교육원 원내 교육(특수교사반 추가) △사이버통일교육 교원 직무과정 1만2천명 이수

○ 교원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운영

- 통일교육 연구 자료 활용, 통일교육 연구학교 교원 워크숍 및 우수 사례 발표·전파 등
- 교육부: 교사연구회 운영(44개), 권역별 워크숍(425명) 및 주제 탐구형 워크숍 운영(81명),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중등용, 15차시) 등 추진
- 교육청별 현장지원단 운영, 체험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 연수, 강연회, 평화·통일교육 연구회, 워크숍 등 추진

* 대표사례 :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평화·통일교육 연간 3시간 이상 연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현장지원단, 평화통일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작가 강연회 등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 리더 역량강화 연수 △(강원도교육청) '통일보다 더 어려운 우리반 통일교육' 연수, '북한을 알면 통일이 보인다' 교사 워크숍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장 통일·역사교육 역량 강화 연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담당교사 연찬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 랜선 특강 및 책나눔 프로그램, 교원 평화·통일 교육연구회 △(울산시교육청) 권역별 평화통일교육 교사 온라인 워크숍 지원

□ 추진 계획

○ 교원 대상 평화·통일교육 강화

- 유치원·초·중·고 교사 및 관리자, 예비교사(전국 교육대학 및 사범계열 학과 학생), 교육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 연수를 통해 통일문제 이해 제고와 미래세대 대상 통일공감대 형성 및 평화·통일교육 기반 마련
- 사이버 교원직무과정 교과목 개발 시 교원 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로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교원 네트워크 강화로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

- '배움·나눔·성장'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교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우수사례 공유
 - * 시도교육청 교사연구회, 교수학습공동체 교원 대상 주제형 포럼, 평화교육 아카데미, 정책지원네트워크 등 운영

○ 시·도 교육청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및 협업

- 시·도 교육청 특색을 살린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 * 비대면 화상 세미나, 토크 콘서트, 독서 활동 등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시·도 교육청별 맞춤형 교원 연수 지원, 교원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

- 평화·통일교육 직무연수, 교원 현장체험 연수, 평화·통일교육 핵심 교원 워크숍·포럼, 관리자 평화·통일 연수, 평화·통일교육 현장지원단, 교원 네트워크, 수업 연구회 활성화 등 지원
 - * 대표사례 : △(교육부) 정책지원네트워크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 교육 교원연수, 남도민주평화길 교원 연수 △(강원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정책리더 역량강화 연수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핵심교원 양성 △(광주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 현장체험 연수 △(경기도교육청) 교사 중심 평화·통일교육 전문 학습공동체 지원, 경기 평화·통일교육 포럼 △(전라북도교육청) 평화통일 공감 토론 및 특강 운영, 현장체감형 연수

3-1-② 공직자 통일역량 강화(통일부 통일교육원)

□ 2020년 실적

- 범정부 차원의 통일 전문인력 양성
 - 각 부처 국·과장급 대상 통일미래를 대비한 전문지식·인문소양·정책기획능력 배양을 위한 통일정책지도자과정(60명, 44주) 운영
 - * 정책과제연구, 토론 참여, 모의 남북회담, 현장견학 등
 - 실무급 통일준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통일미래기획과정(연 2회, 회당 6개월) 운영, 참여기관 확대(20개)로 통일 전문인력의 전문성·다양성 확보
 - * 방위사업청, 전라남도, 제주도 신규 참여
- 기관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실시
 - 중앙·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화교육 및 교류협력 사례·제도 위주의 과정 운영, 업무 수행 능력 배양
 - 실무/중견, 군인/경찰 등 기능별·직무별 교육 실시
- 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 연계도 추진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경상북도인재개발원 등

□ 추진 계획

- 통일 대비 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
 - 중앙 및 지자체 관계자 이외에 다양한 분야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에게 대한 평화·통일교육 기회 부여
- 통일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견학 장소 다양화
 - 남북통합문화센터, 남북산림협력센터, 평화의담 등
- 과정별(기능·직무) 특색에 맞는 △교육기간 △교과목 등 편성 운영

3-2 전문가 양성 및 파급력 제고

3-2-① 세대별·분야별 전문가 양성(통일부 통일교육원)

□ 2020년 실적

- 통일정책 차세대과정 운영
 - 2030 대학(원)생 대상(전공불문)으로 통일공감대 형성 및 통일미래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총8강 교육
- DMZ 평화해설사 양성반 운영
 - DMZ 평화의 길 개방을 맞아 현장 해설사를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와 평화통일 관련 이해도 제고를 위한 특별반 운영
 - * 각자의 해설 기법 소개 및 시뮬레이션 진행
- 기존 통일교육 전문강사 대상 재교육(129명) 실시
 - 전문강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 2년마다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개정, 최근 한반도 정세와 동향 등 시의성 있는 강의를 적시에 지원
 - *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통일부 훈령, 2019.7.22.)

□ 추진 계획

- 2030세대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남북교류협력 대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차세대 통일전문가과정」 신설
 - △주1회 △3학기(학기당 3개월) △기본반·심화반 운영 △판문점·하나원 등 현장방문 구성, 이론과 현장경험 제공
- 남북교류 행사 경험이 있는 문화예술계와 관광해설사 등으로 신규 교육 대상 확대
 - 문화예술계, 건축사협회, 판문점 관광 안내자 등 교육 대상 다변화
 - DMZ 평화의 길 추가 개설에 대한 평화해설사 양성과정(2회)의 안정적 운영
- 통일교육 전문강사 대상 재교육 등 지속적 관리 강화
 - * 전문강사 재교육 법제화 신설(통일교육지원법 제9조의2②항, '21.1.5.시행)

3-2-② 사회지도층을 통한 파급력 제고(통일부 통일교육원)

□ 2020년 실적

- 사회지도층 대상 제10기 통일정책최고위과정(38명) 운영
 - 학계, 종교계, 언론·방송계 등 다양한 분야 최고책임자 대상, 한반도 정세와 평화통일 관련 이해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 제고
 - * '20년 국회의원, 각 부처 차관급 참여로 통일정책 협업 기여
 - 각 부처 및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한반도 정책 △평화와 안보 △남북 보건의료협력 △통일외교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강의 진행
 - * 통일부장관, 민주평통상임부의장, 국립외교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등 분야별 정부 정책결정자가 강사로 참여
 - 판문점 현장견학 실시(11.21)

□ 추진 계획

-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계 여성 지도층 인사의 참여 확대
 - 통일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
- 교육수요 반영 및 커리큘럼 개선 노력 지속
 - 통일문제 관련 공론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과정 설계
- 기존 수료자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회 전반 공감대 확산 전파
- 연말 '2021 통일정책최고위과정 수료자 워크숍' 실시
 -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을 공유하는 시간 마련

4 평화·통일교육 국민인식 제고

◎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평화통일의지를 결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 강화 및 통일공감대 확산

* 법 규정 사항 : 통일교육주간(제3조의3)

4-1 통일공감 참여형 문화행사

4-1-① 통일교육주간(통일부 통일교육원)

□ 2020년 실적

- 통일부·교육부 공동주최로 제8회 통일교육주간(5.18.~5.24.) 진행
 - 코로나19 상황에 신속 대응, 법정교육주간 최초로 「온라인 페스티벌」로 운영, 폭넓은 국민 참여로 통일교육 사회적 합의 형성
 - 통일부장관·교육부장관의 기념사, 올해의 통일교육인물, 오늘의 강연·오늘의 교재·오늘의 놀이 등 시리즈, 온라인 음악감상실·온라인 갤러리, 국민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온라인 강의, 통일교육 선도대학 및 연구학교 자체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대면·비대면 행사 진행
 - 각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 주관 체험 프로그램 제공, 기존 「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를 「통일공감 평화통일 축제」로 행사명 변경, 온라인으로 개최(11.11.~11.22)
 - EBS 특집 프로그램 「건축탐구 집」, tvN 웹토크쇼 「감성토크 굿피스 시즌 2」 방영 등을 통해 평화·통일 문제 조명

□ 추진 계획

- 다양한 매체와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 대상 평화·통일 및 사회통합 메시지 전달
 - 평화·통일의식 제고 및 사회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 추진
 - 지역별, 학교급별 프로그램 다양화로 평화·통일교육 저변 확산
 - 학교·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다양한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를 활용, 학교 및 지역사회 참여 방안 제고

4-1-② 지역별 통일공감대 행사(지방자치단체)

□ 2020년 실적

-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청소년, 일반시민 등 참여 행사 개최
 - 사회적 대화, 평화·통일문화행사, 통일캠프, 퀴즈 대회, 아이디어 공모전, 강연회 및 체험·전시 학습 공간 제공 등
 - * 대표사례 : △(서울특별시) 서울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평화·통일 창작물 시민 공모전, 평화·통일 가족 캠프, 4개국 어린이 합창단 온라인 합창(영상)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온라인 통일골든벨, 역사기록 사진전, 세종평화통일포럼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인천을 위한 시민회의 △(대전광역시) 평화기행, 황영준 화백 전시회 △(경기도) 2020 DMZ 포럼, 평화콘서트 △(경상북도) 2032 남북공동올림픽 개최 기원 청년토론회·노래개사 대회, 한국전쟁 70주년 평화음악회 △(광주광역시) 광주평화회의 △(충청남도) 6.15 20주년 기념 통일콘서트, 충남 통일공감축제, 한민족문화제전
- 민간 차원의 문화행사, 유적지 탐방, 강연회, 체육행사 등 지원
 - * 대표사례 : △(강원도) 평화공감 DMZ 종주 △(대전광역시) 평화통일 문화제, 평화통일 공감대회, 우리고장 평화플랜 대전평화로드

□ 추진 계획

- 지역사회 중심 '평화·통일공감대 확산' 노력 지속
 - 공감대 확산 사업 지속 개발, 시민의 참여도가 높은 사업은 콘텐츠·형식 등을 발전시켜 지역사회 대표 사업으로 지속 추진
 - * 대표사례 : △(강원도) 평화공감 DMZ 힐링여행(기존 DMZ 종주 보완·발전) △(대전광역시)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행사(남북교류협력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평화통일마라톤대회, 토크콘서트 등) △(경기도) 2021 새로운 경기 통일한마당, DMZ 155마일 걷기 대회, 평화통일마라톤대회, Tour de DMZ, 2021 DMZ 포럼 △(부산광역시) 평화통일박람회 개최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시민소통 플랫폼 사회적 대화 △(인천광역시) 인천통일 어울마당, 서해평화특별기간 '개성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 전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대대학 정책아카데미 △(대구광역시) 대구 통일(교육)박람회 확대 개최 △(광주광역시) 평화·통일문화 확산 사업 개발 추진 △(충청남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체험·교육 프로그램 공모
- 통일교육주간, 8.15 광복절 등 특정 계기 적극 활용
 - 주요 계기 시, 지역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2020년 지방자치단체 통일공감대 행사 사례 >

구분	사업명	일시
강원도	평화공감 DMZ 증주	6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인천을 위한 시민회의: 인천시민 평화를 말하다	9월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온라인 통일골든벨	11월
	「독립전쟁, 그 현장을 가다」 이북도민 역사기록 사진전	11월
	세종평화통일포럼	12월
경기도	2020 DMZ 포럼	9월
	한반도 평화기원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콘서트(3회)	6~12월
대전광역시	평화기행(산내 골령골, 노근리, 제주 4·3평화공원)	10~12월
	조선화가 황영준 화백 전시회	11월
	우리가 만드는 대전평화로드 선포식·체험·홍보 등	11월
	2020 평화통일 문화제	12월
	평화통일 공감대회(토크콘서트, 언택트 가족 퀴즈대회 등)	12월
서울특별시	서울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9~10월
	평화·통일 창작물 시민 공모전	8~9월
	평화·통일 가족캠프(서울시내 템플스테이, 강화도 글램핑)	8~9월
	4개국 어린이 합창단 온라인 합창 영상 제작·확산	-
광주광역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6월
	광주평화회의	11월
	통일쌀 경작지 사업	6월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 코로나와 평화통일, 그리고 광주의 길	10~12월
충청남도	6·15 20주년 기념 통일대축전	6월
	6·15 20주년 기념 통일콘서트: 함께 부르는 통일아리랑	6월
	2020 충남 통일공감축제	6월
경상북도	청소년 통일골든벨 경북지역 대회	11월
	2032 남북공동올림픽 개최 기원 경북지역 청년토론회	10월
	2032 남북공동올림픽 개최 기원 한반도 평화염원 노래개사 대회	8~10월
	한국전쟁 70주년 평화음악회 '오직 평화, 다시 만나요'	10월

4-2 통일공감 온라인 홍보

4-2-① 온라인 매체를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통일부 통일교육원)

□ 2020년 실적

- 소통·참여 강화를 위한 뉴미디어 사업 착수
 - 미래세대와의 소통 및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30세대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영상·사진 중심의 콘텐츠 제공 서비스 추진
- 수요자들의 편의성과 선호를 반영, 교육 자료 게시 매체를 다양화
 - 유튜브를 교육채널로 활용 △클립영상 △사이버강좌 영상 △2030세대용 교육 자료 △웹 토크 등 신규 콘텐츠 탑재
-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 진행
 - 교육 교재 및 사이버강의 등에 대한 선호도와 수요 조사,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 진행
 - * △통일교육주간 인증 이벤트 △창작 통일동요 공모전 이벤트 △사이버강의 학습 완료 이벤트 △내가 만드는 통일교육 콘텐츠 등

□ 추진 계획

-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홍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
 - 2030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사를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 평화·통일교육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및 본격 사업 추진
 - * 『뉴미디어를 활용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등 활용
- 뉴미디어 매체에 적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교육과 홍보를 병행
 - 웹툰·클립영상·유튜브 콘텐츠 리뷰* 등의 형식에 평화·통일교육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SNS로 배포
 - *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평화·통일 관련 도서·영상자료 등 콘텐츠에 대한 활용 방법, 후기 등을 전달하는 방식
 - * 캐릭터(「유니프렌즈 123」)를 활용한 뉴미디어 콘텐츠 개발 확대

5 평화·통일교육 콘텐츠 및 조사·연구

- ◎ 출판물, 영상자료,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일선 교육 현장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고 누구나 쉽게 통일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러닝(E-Learning) 서비스 제공, 실태조사, 연구 활동 지원

5-1 콘텐츠 개발

5-1-① 출판물(통일부 통일교육원)

□ 2020년 실적

- 기본교재(『2020 통일문제 이해』, 『2020 북한 이해』) 발간
 - △개론서 성격 강화 △남북관계 최근 현황 반영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 과제 구체적 제시 등
- 전문 출판사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소재의 시리즈 도서 개발 및 디자인 등 품질 개선
 - * △인문학 시리즈 도서 『손안의 통일』(5종) △명사들의 『평화·통일 특강』 △청소년 평화교육 워크북 『평화, 나날이 한 걸음씩』 △한반도의 평화의 길을 묻는 『세계질서의 변화를 읽는 7개의 시선』 △『평화로 가는 사진여행』 등
- 유아 및 시각·청각 장애인 등 대상 맞춤형 자료 개발
 - * △통일 그림동화 『사라진 마법의 구슬』 △2019년 발간 그림동화 『캠핑 가는 날』 오디오북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등

□ 추진 계획

- 기본교재 3종 발간 및 디자인 개선
 - * 『2021 통일문제 이해』, 『2021 북한 이해』, 『2021 한반도 평화 이해』(신규)
- 다양한 소재 및 주제의 시리즈 도서 개발 확대
 - 북한 및 남북관계 지식사전 등 기존 자료 증보판도 제작
- 유아·아동 등의 수요에 맞는 여러 가지 형식의 도서 지속 개발

5-1-② 영상자료(통일부 통일교육원)

□ 2020년 실적

- 인기 TV 프로그램과 협업 확대, 통일교육 영상의 인지도·활용도 제고
 - △선을 넘는 녀석들(MBC) △방구석 1열(JTBC) △건축탐구 집(EBS) △다큐 잇it(EBS) △신비아파트(CJ) 등
 - * MBC <선을 넘는 녀석들> 시청률 △4·19 특집편 6.9% △6·25 특집편 4.5% 등 (cf. 평소 시청률 3~4%대)
-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수업 확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학교 교과 연계형 클립영상 다수 제작 및 즉시 제공
 - △신규 클립영상 제작(4편) △교육부·남북하나재단 등의 콘텐츠 중 클립영상에 적합한 콘텐츠를 활용, 재제작(74편) 등
 - * △전년 대비, 3.5배 이상 제작·배포('19년 21편 → '20년 78편) △교사용 「클립 영상 활용 가이드」도 제작·배포
- 그 이외에도 △2030 대상 통일 웹토크 「굿피스 시즌 2」 △공공부문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공공영상 자료(2편) 등도 제작·보급



MBC 협업 영상, 「선을 넘는 녀석들」



JTBC 협업 영상, 「방구석 1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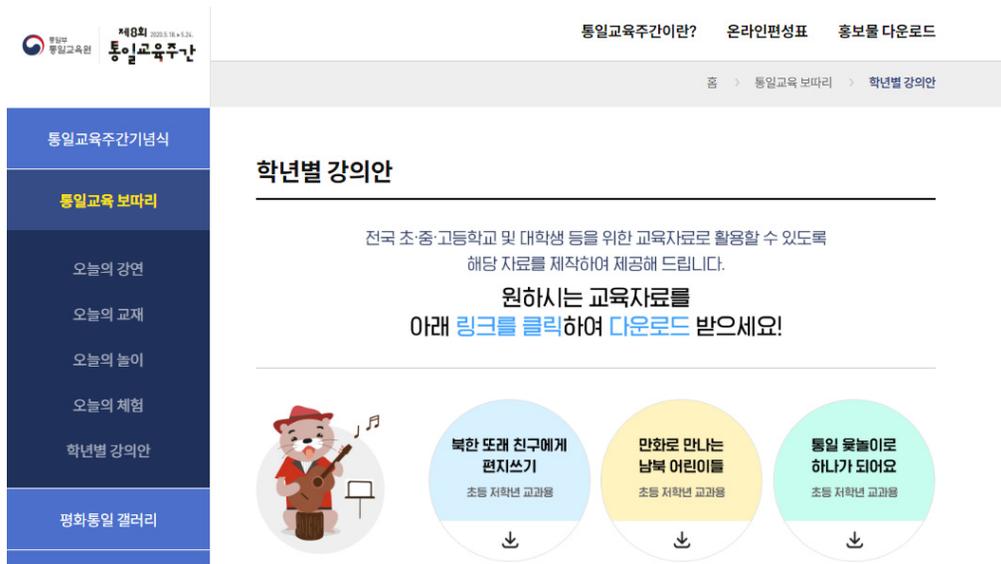
□ 추진 계획

- 대상별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영상 콘텐츠 지속 개발
 - 평화·통일, 사회통합 문제 등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문학·문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메시지 전달
 - 예능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클립영상, 웹 콘텐츠 등 형식도 다양화
- 보급 채널을 확대하여 영상 콘텐츠 확산 및 활용도 제고
 - △누리집 이외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 등에 영상자료 탑재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등에 영상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
- 공공부문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영상 자료 지속 개발 등

5-1-③ 강의안 등 기타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

□ 2020년 실적

- 통일교육주간 계기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및 학습 자료 등을 포함한 표준 강의안(PPT) 개발·보급
 - △ 초등학교 저학년(4종) △ 초등학교 고학년(3종) △ 중·고등학교(3종) △ 대학생·일반인(1종)
 - * △ 남북관계 상황 및 통계 등 현행화 △ 최신 동영상 교체 △ (대학생·일반인) 평화·통일·북한문제 전반에 대한 이해 강의안 △ (중·고등) 통일의 필요성·비전, 퀴즈 등



- 학교 평화·통일교육 실시 기반 강화를 위한 자료 제공
 -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클립영상을 활용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2020 클립영상 활용 가이드」 제작

□ 추진 계획

- 일선 교육 현장 수요를 반영한 표준 강의안 지속 개발
- 학교 현장 교사들이 신규 및 재제작 클립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클립영상 활용 가이드」 지속 제작

5-1-④ 교수·학습 콘텐츠(교육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 2020년 실적

○ 교육부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교수·학습자료(초·중등 각 1종), 온라인콘텐츠(동영상 1종, 카드뉴스 3종)
- 평화·통일교육 우수 실천사례(25건) 및 아이디어(21건) 공모
- 평화·통일교육 누리집 '통통 평화학교'(통일로 통하는 평화학교) 운영

○ 교육청별 교수·학습자료 제작·보급

- * 대표사례 : △(경기도교육청)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교재 △(전라남도 교육청) 남도민주평화길 자료 개발(목포, 나주, 화순 편) △(광주광역시교육청) 온라인 민주시민교육 나눔터 운영: 4·27판문점선언,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계기 수업 자료 공유 △(강원도교육청) 초등교재 '같이 가자, 통일 강원 여행' 제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퀴즈대회 자료집 △(경상북도교육청) 스마트 통일교육 앱 개발(5편), 워크북 「함께 걷는 길 민주로 평화로」 제작

○ 지자체별 교수·학습자료 제작·보급

- * 대표사례 :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영상자료 『부산에서 유럽까지 기차 타고 끝까지』 제작·보급 △(경기도) 공직자 대상 이러닝 콘텐츠 『경기도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현장체험』 제작

□ 추진 계획

○ 다양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우수자료 공유, 콘텐츠 관리위원회 운영, 워크숍 등을 통한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기반 마련

- * △(교육부) 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수업 사례 공유 △(부산광역시) 테마별 시민 체감형 평화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경기도)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교재 개발 △(경기도교육청) 성장단계별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교육자료 개발 △(전라남도교육청) 남도민주평화길 교수학습 자료(여수 외 2개 지역)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연계 평화·통일교육 교수·학습자료(초·중·특수 3종) △(강원도교육청) 중등교재 '같이 가자, 통일 강원 여행' 제작·보급

5-2 이러닝 개발

5-2-① 사이버강의(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부)

□ 2020년 실적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증가하는 사이버교육 수요에 선제적 대응, 사이버 통일교육 이수자 수 역대 최고 기록('19년 약 22만 명 → '20년 약 44만 명 이수)
 - 사이버 통일교육의 양적 확대에 적극 대응, 수강생들의 학습효과 제고 도모
 - * △사이버 강좌 정원 확대 △사이버 콘텐츠 다양화 △이 달의 추천과목 △사이버 교육 스테디셀러 △입문·기초·심화 등 '내게 딱 맞는 커리큘럼' 등 구독경제 개념을 차용하여 강좌 운영, 2030세대의 유입 확대
 - 통일교육원 사이버교육에 적합한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방법에 대한 '학습 안내 가이드'* 제작
 - * '온라인 학습 효과를 두 배로 높이는 심리학 기술'(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공공 통일교육 수요 분산을 위해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 요청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적시 제공
 - 고용노동부 등 101개 기관에 사이버 콘텐츠를 제공,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19년 48개 기관 → '20년 114개 기관)
- 교육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원격수업 콘텐츠(통통평화학교,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등) 적극 활용

□ 추진 계획

- 사이버 평화·통일교육 환경 개선 및 편의성 제고
 - △고객 맞춤형 사이버 콘텐츠 개발 △사용자 중심 교육 과정 운영 등
- '국민'이 제안하고 '통일교육원'이 만드는 통일교육 콘텐츠 제작 확대
- 뉴미디어(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맞춤형 콘텐츠 개발 확대
-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 요청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제공

5-3 평화·통일교육 관련 조사·연구

5-3-①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통일부 통일교육원)

□ 2020년 실적

- 초·중·고등학교 670개교 대상 2020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실시 ('20.11월)
 - △초·중·고등학생 68,750명 △사회·도덕·역사 등 통일교육 관련 교사 등 4,045명 대상, 통일·대북·평화인식, 통일교육 관련 설문

< 2020년 학교통일교육 학생·교사 실태조사 >

○ 초·중·고 학생

- 북한인식 : 협력 54.7% > 경계 24.2% > 지원 8.4% > 적대 8.2%)
- 평화 인식 : 평화롭지 않다(35.2%) > 평화롭다(17.6%)
- 통일 필요성 : '필요' '17년·'18년 수준 회복, '불필요' 증가
- 통일 장애 요인 : 북한체제(46.8%) > 주변국가 반대(19.9%) > 군사적 위협 (9.7%) > 남북한 차이(7.6%) > 경제적 부담(5.9%) > 사회적 혼란 우려(5.8%)

○ 교사

- 교과수업 중 학교 통일교육 경험 여부 : '예'(93.5%), '아니오'(6.5%)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점 부분 : 사회적 공감대 조성(86.7%) > 교수 학습 자료 개발(82.6%) > 교사의 전문성 향상(70.7%) > 교과서 개정(67.9%) > 관련 법, 제도 정비(67.5%)
- 교과수업 중 학교 통일교육 경험 여부 : '예'(93.5%), '아니오'(6.5%)

□ 추진 계획

- 2020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학술대회(3~4월중) 개최
 - 조사결과에 대한 계량적·질적 연구 촉발 및 대국민 홍보 기능 수행
- 2021년 실태조사 관련
 - '21년 실태조사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문항 개선 등

5-3-② 평화·통일교육 학술 연구 지원

(통일부 통일교육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시·도 교육청)

□ 2020년 실적

- 「2020 평화·통일교육 학술회의」 개최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평화의 시대, 새로운 통일 교육 방향'을 주제로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논의
- 평화·통일교육 연구 촉진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연구센터」 개소('20.12)
 -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 기능 활성화를 통해 통일교육 보완·발전
- 평화·통일교육 발전 관련 연구 활동
 - 『청소년 평화의식 함양을 위한 인문학적 실천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 『세계 정치경제 변화와 한반도 평화 및 통일전망』,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개선방안 모색』 등
- 지역별 평화·통일 담론 형성 및 연구 활동
 - 국제정세 및 한반도 변영과 평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모델 발굴 등 논의
 - * 대표사례 : △(강원도)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DMZ 평화포럼 △(부산광역시) 부산평화포럼 △(경상북도) 경상북도 남북경제협력 포럼 △(대전광역시) 한반도 평화경제 컨퍼런스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 △(대구광역시) 한반도 평화통일 학술토론회
- 주요 학술 행사 계기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및 주요 사업별 추진 방안에 대한 메시지 전달
 - * 대표사례 : 대학연합통일교육 학술회의,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학술회의, 덕성여자대학교 창학 100주년 기념 「남북 상호 이해와 문화교류」 국제학술회의 등

□ 추진 계획

- 평화통일교육 확산 및 사회통합 지향 통일교육 담론 형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 개최 및 연구용역 추진
 - * 대표사례 : △통일부 「평화통일교육연구센터」 주관 정책연구과제 추진 △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 지방자치단체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
 - * 대표사례 :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 3.0시대 추진방향 및 정책의제 발굴 연구용역 발주 △(대전광역시) 남북한 과학교류를 위한 포럼 △(경기도) 경기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포럼 △(대구광역시) 시민 통일토론회

6 평화·통일교육 체험공간

- ◎ 평화·통일 및 북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 미래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운영하여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 「통일교육 지원법」 규정 사항 : 통일관(제6조의4~제6조의6)

6-1 복합 평화·통일 문화공간

6-1-① 통일관(통일부 통일교육원)

□ 2020년 실적

- 오두산 통일전망대 기획 전시 등 콘텐츠 다양화 및 전시 환경 개선을 통해 평화·통일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
 - △남북한 특별전 「평화, 바람이 불다」 △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 전 등
 - △옥외 조경 개선 △영상장비 교체 △안전 시설물 확충 △CCTV 화질 개선 및 보안장비 교체 등 전시환경 개선을 통한 관람객 편의 제공
- 지역 통일관 통일체험 프로그램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는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방식 확장
 - 평화·통일 관련 △공모전 △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이벤트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흥미롭게 구성
 - 통일 정책 및 북한 사회 변화 등을 반영하여 5개 지역 통일관 전시 패널 교체 지원, VR 및 터치스크린 등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장비 보급

□ 추진 계획

-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대표적 평화·통일 체험 교육장으로 육성
 - 평화·통일 콘텐츠 제공과 전시환경 개선을 통한 통일 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역할 제고
- 지역 통일관을 통일체험 및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
 - 지역 통일관 리모델링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추진
 - 통일관이 없는 지자체에 통일관 지정·설립 추진

6-2-① 한반도통일미래센터(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2020년 실적

- 코로나19 대응, 체험연수 운영방식 다양화 등으로 동력 유지
 - △연천군 정책자문위원 등 소규모 특화프로그램 운영(35회) △하나들 학교 등 청소년 대상 체험연수 실시(6회)
- 체험연수 프로그램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확충 및 개선 추진
 -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영상프로그램 개발(3종) △미래체험관 개선을 통한 3D·애니메이션 구현 △신규청소년지도자 역량교육(5회) 등
- 지역사회와 협업·소통을 통한 센터 이미지 제고 및 통일공감대 확산
 - △연천군 집중호우시 주민대피시설로 센터시설 활용(8월) △연천군 중부원점 테마관광시 센터시설 개방(12.1) △센터 생활치료센터 지정(12.22) 등

□ 추진 계획

-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코로나19 정상화시) 학교(44개교) 및 단체 등 대상 체험연수 실시
△(코로나19 지속시) 소규모 특화연수·찾아가는 연수 등 다양한 방식 추진
- 청소년 연수시설 대상 프로그램 보급 강화
 - △보급대상 기관을 기존 국립수련시설에서 지역별 청소년 기관으로 확대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 등
-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창의적이고 안전한 체험프로그램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및 안전시설 확충
 - △상징조형물 및 라인아트(작품명: 38선 위의 평화의 그릇) 조성 △안전·편의시설(비박이시설, 조명, CCTV 성능개선) 공사 등

7 글로벌 평화·통일교육

- ◎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해 해외 신진학자, 외국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화·통일교육 실시, 해외 전문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화·통일교육의 외연 확대

7-1 평화·통일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7-1-① 해외 전문가 초청(통일부 통일교육원)

□ 2020년 실적

-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반도 문제 관련 전문가 초청, 기관별 맞춤형 특강 실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다양한 국제적 시각으로 접근
 - 초청 전문가: △한센동(중국) △이상수(스웨덴)
 - △미중전략경쟁 배경 하의 한중관계 △중국과 북한 경제개혁 비교 △유럽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반도의 평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등 주제로 강의
 - * △연구기관 △정부부처 △대학 대상 강의(총 19개 기관, 329명)
- 외국인·재외동포 대상 영문 번역 도서(『관문점을 소개합니다』) 제작·배포

□ 추진 계획

- 평화문제 관련 전문가 초청 및 특강을 통해 평화적 관점의 통일담론 확산
- 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평화·통일 콘텐츠 개발 검토
 -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해 콘텐츠 확산
- 해외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미나, 좌담회, 토크콘서트 등 참여형 교육 확대
- 외국인·재외동포 대상 평화·통일교육 교재 영문 번역 발간·배포

7-1-② 평화·통일 글로벌 교류(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부, 시·도 교육청)

□ 2020년 실적

○ 교원 해외 교류 및 해외 사례 연구 등

* 대표사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국-독일 평화·통일교육 교원 교류 연수

※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교류 제약

□ 추진 계획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경 간 이동 또는 영상 회의 등을 통한 글로벌 교류 추진

○ 호주, 북유럽 등 해외 지역의 평화문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평화·통일교육 발전 방안 모색

○ 평화교육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해외 전문가와 교류하고, 한국형 평화통일교육 적용 방안 모색

- 시도 교육청 등 각 기관과 협력하여 평화교육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가능성 검토

7-2 글로벌 평화통일교육 추진

7-2-① 해외 신진학자 대상 평화통일교육(통일부 통일교육원)

□ 2020년 실적

- 「2020 해외신진학자 화상세미나」 개최, 해외 신진세대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를 위해 참여형 교육 실시
 - 전 세계 28개국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신진학자·공무원·언론인 등 총 47명 참여
- 기존 통일아카데미 참가자들과의 소통 지속, 친한 성향 인사 확대
 - 참가자 대상 한반도 문제 관련 동향 제공, 해외 기관 협업, 페이스북 커뮤니티 운영 등

□ 추진 계획

- 신진학자 통일아카데미 사업 해외·국내 과정으로 확대 운영
 - 국립국제교육원 GKS 장학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검토
- 역대 참가자(155명)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확대
 - 영문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개편 등을 통해 참가자 유대 강화 지원
 - * 다양한 정보 및 자료 제공
 - 동문책자(Alumni Book) 제작으로 연구 및 활동내용 공유
 - 참가자 방한 등 계기 신진학자 네트워크 활용
- 2022년 1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추진 관련 검토

7-2-② 재외동포·외국인 대상 평화·통일교육(통일부 통일교육원)

□ 2020년 실적

- 외국인·재외동포 대상 「판문점을 소개합니다」 영문판 발간
 -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통일부 판문점견학지원센터 등 배포
- 해외 통일교육위원 온라인 연찬 교육
 - 코로나 상황으로 해외 통일교육위원 국내 초청 연찬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실시(3회)

□ 추진 계획

- 외국인, 재외동포 대상 평화·통일교육 제공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 △국립국제교육원 △연세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과의 연계과정
- 해외 통일교육위원 국내 초청 연찬반 교육 실시
 - 해외지역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교육위원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
 - * 10월 중, 40명 예정
- 영문리플렛 제작, 영문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홍보 활성화
- 온라인 교육, SNS 활용 교육 등을 통해 플랫폼 다변화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외 통일교육 장려 의무 규정 신설(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제6항, '21.1.5.시행)



협조·요청사항

V. 협조·요청사항

1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실시

1 대상 기관

- 통일교육지원법은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제6조의7)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 통일교육 의무 대상 기관 >

-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 : 18부 5처 18청 * 재외공관 제외
 -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한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 : 2원 4실 6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교육자치단체(시·도 교육청)
 - * 각급 학교(교사) 제외(단, 아래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학교는 포함)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 *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은 비대상

2 교육 방법

- 통일교육 계획 및 수강 방법
 - 의무 이수시간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이며, 교육 방식은 △집합 교육(대면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강의 △기타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 중 선택하여 수강
 - 본부·본청 등 최상위기관은 대면 강의 1회 이상 포함 권장

< 통일교육 계획 및 수강 방법>

- 집합 교육 : 추천 강사, 외부 초청강사, 소속 직원 등 대상 기관에서 강사를 섭외하여 실시
- 시청각교육 : 교육 대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일교육 관련 영상자료 시청
- 사이버강의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교육센터' 또는 공공부문 통일교육 홈페이지(www.uniedu.go.kr/unipudu/) '공공과정 사이버교육 신청'을 통해 강의 수강 △나라 배움터 등을 통한 통일교육 주제에 맞는 강의 수강
- 기타 : △세미나 △학술회의 △워크숍 △독서 토론 △학습동아리 △현장견학(DMZ, 통일 전망대, 지역통일관 등 통일·북한 관련 장소·시설물 등) △통일교육원 원내 교육 참여 △지역통일교육기관(지역통일교육센터 등) 활용 등 가능

* 교육자료 등의 단순 배포·게시, 전자우편 발송 등은 불인정

< (예시) 통일교육의 내용 >

과목	내용 요소
통일 문제	· 통일의 의의와 필요성 · 남북관계의 전개 ·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 · 통일노력(통일방안 비교) · 통일의 비전과 과제 ·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 통일 미래상 · 분단과 평화 · 평화경제 · 분야별 남북교류 및 인도적 협력 · 통일인문학 등
북한 이해	· 북한을 보는 시각 · 북한 변화 전망 등 · 북한 분야별 실상(정치·외교·군사·경제·교육·문화·예술, 주민생활 등)
한반도 평화	· 평화 개념 · 한반도 평화 현실 · 한반도 평화구축 방법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비전

*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 『통일 문제 이해』, 『북한 이해』, 『한반도 평화 이해』를 참고, 동 자료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 '자료마당'에서 내려받기 가능

- 통일부(통일교육원)는 통일교육 강사 정보 및 콘텐츠 지원
 - △추천 강사 리스트 △표준 강의안 △사이버교육과정(콘텐츠 포함) △영상자료 △도서자료 등
 - 실적 집계 편의를 위해 매월 사이버강의 수강결과를 수강자 소속 최상위 기관에 공문으로 통보
- 대상 기관(소속 직원)은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준수 및 유의사항 숙지
 -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평화적 통일지향 △개인적·당파적 이용 금지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법 제3조)
 - 교육 내용이 평화통일과 무관하거나 통일교육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실적 불인정 가능

3] 교육 실적 제출

- 대상 기관들은 매년 2.28까지 전년도 통일교육 실적 제출
 - 교육 대상 직원의 80% 이상 참여를 권장하며, 제출된 실적을 집계하여 국무회의 보고 예정
 - * 제출된 실적에 대한 점검·보완 요구·현장점검(필요시) 실시 가능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직자 안보교육'과는 별개로, '통일안보(안보통일) 교육' 명칭으로 실적 제출 시 불인정

2 통일교육주간 참여

1 통일교육주간 개요

- 국민의 통일외지 결집을 위해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규정(법 제3조의3)
 - △기념행사 △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국민들의 통일외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등 추진
- '21년 제9회 통일교육주간은 5.24.~5.30.으로, 동 법정 주간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별 행사 개최 필요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하되 대면·비대면 방식을 탄력적으로 활용

2 통일교육주간 참여 요청

- (교육청) △통일교육주간 평화·통일교육 수업 진행 △사회통합 가치를 반영한 수업 진행 △교육감 등 일일 통일교사 참여
 - 지원 사항 : 학년별 강의안, 학급 단위 참여 온라인 이벤트 등
- (지자체) 자체 평화·통일교육·문화 프로그램 추진 및 통일관, 지역통일 교육센터, 시민단체 등의 통일교육주간 행사 지원
- (부문별 기관)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추진
 - 학술세미나,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공모전, 온·오프라인 이벤트, 홍보 등
- (공통) 세대별·지역별 다양한 행사·프로그램 진행으로 국민 참여 확대

3 지방자치단체·교육훈련기관 평화·통일교육 강화

1 지방자치단체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교육 시책 수립·시행(법 4조)
 - 지역사회 시민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 및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 지역별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 및 준수
 - △지역통일교육계획 수립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원 △통일교육의 위탁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등
 - * 조례 제정 지자체(13)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 * 조례 제정 교육청(15) :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 교육훈련기관 평화·통일교육 실시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교육훈련기관은 교육 과정에 평화·통일교육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교원연수기관 △평생교육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등(법 7조·시행령 6조)

< 평화·통일교육 권장 시수 >

- 2주 이상 3개월 미만 교육훈련과정 : 1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교육훈련과정 : 4시간 이상
- 6개월 이상 교육훈련과정 : 8시간 이상

- 교육훈련기관이 강사를 섭외하여 자체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거나 통일교육원 사이버강의 이수를 각 기관 교육 실적으로 집계 가능
- 통일교육원과 교육훈련기관 연계과정을 신청하는 경우 현장학습 등을 포함한 별도 과정 진행도 협의 가능



부 부

VI. 부록

1 2020년 통일교육 통계

① 통일교육원 교육과정별 통계(단위 : 명)

교육과정		횟수	인원	교육과정		횟수	인원
전문과정	통일정책최고위과정	1	38	국제	해외신진학자반	1	47
	통일정책지도자과정	1	60		소 계	1	47
	통일미래기획과정	2	29	특별과정	통일정책 차세대과정	1	37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	4	129		특별반	4	98
	소 계	8	256		평화해설사반	1	15
공직자과정	통일부공무원반	7	602		(기타과정)연찬반 등	3	107
	중견간부공무원반	3	63		소 계	9	257
	중견실무공무원반	2	84	사이버교육	공공과정(사이버)	11	389,478
	비상대비 업무담당반	2	41		교원과정	11	12,336
	남북교류협력담당반	1	22		2030과정	상시	22,556
	지자체공무원반	6	141		시민과정	상시	11,905
	경찰공무원반	4	110		방북교육과정	상시	418
	군인공무원반	2	78		경남교육청과정	상시	5,684
	공직자평화통일역량강화반	1	18		소 계	22	442,377
	공무원 교육기관 연계과정	2	239		원내교육 총계		101
	공공기관반	1	12	원외교육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1,038	80,262
	소 계	31	1,410		통일 특강	105	7,115
교원과정	중등교장(감)	3	37		통일 강좌	429	3,594
	중등교사(기본)	3	74		참여체험형 통일교육	327	17,594
	중등교사(심화)	2	64		통일관 체험프로그램	15	25,370
	초등교장(감)	2	34		지역통일교육센터	599	234,607
	초등교사(기본)	5	89		통일교육협의회	201	12,377
	초등교사(심화)	2	29		(기타)사회단체 등	51	2,315
	예비교사반	1	14		해외전문가 초빙교수	19	347
	소 계	18	341		원내교수 출강	155	10,142
사회단체	통일교육위원반	7	245		원외교육 총계		2,939
	통일단체반	2	36	총 계		3,040	838,778
	종교단체반	1	29				
	하나센터반	2	57				
	소 계	12	367				

* '2020년 공공부문 통일교육' 참여 현황: 88만 명 ('19년 67만 명)

② 교육훈련기관별 통일교육* 통계

(단위 : 시간/명)

구분	소속	교육훈련기관	현장학습		원내 강의	
			시간	인원	시간	인원
국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	14	18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	1	169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	10	308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	6	132
	통계청	통계교육원	-	-	129	4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	2	392
지자체	서울특별시	서울시인재개발원	-	-	125	339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	-	-	1,460	950
	경기도	경기도인재개발원	-	-	21	26
	강원도	강원도 인재개발원	-	-	25	513
	전라북도	전라북도인재개발원	-	-	14	14
	경상북도	경상북도인재개발원	-	-	16	817
	경상남도	경남인재개발원	-	-	8	197
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	-	-	21	6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탐라교육원	-	-	5	137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	-	186	1187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	-	30	331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연수원	18	96	51	354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단재 교육연수원	12	32	59	779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연수원	-	-	4	155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교육연수원	-	-	5	190

* 사이버강의 및 원외 교육 제외

2 2021년 통일교육 예산

□ 통일교육원 주요사업비 예산

구분	사업명	예산(백만원)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285
	평화의 길 통일 걸기	750
	통일준비 전문인력 양성(정책지도자, 미래기획)	759
	통일미래 맞춤형 교육 운영(최고위, 전문강사)	189
	국제협력을 통한 통일교육 추진	151
	공직자 평화통일 역량강화 프로그램	72
	평화해설사 양성	14
	온라인 수업체계 구축	100
	통일교육자료 개발 보급	2,348
	통일교육자료센터 운영	58
계	4,726	
학교 통일교육 강화	초중고 학교통일교육 지원	1,323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2,701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1,655
	계	5,679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구축	2,313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통일관 지원	2,413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191
	계	4,917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	660
통일교육원 시설운영	청사 관리 운영	1,308
	시설 개보수(시설비 등)	555
	계	1,863
총계		17,845

* 인건비, 기본경비 제외

3

통일교육 법령

① 법

통일교육 지원법

(법률 제17822호, 2021.1.5. 일부개정, 2021.1.5.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통일관"이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6조의4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 국민의 통일의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6.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 10.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
- 11. 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국민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체험활동을 하는 시설을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하 "통일관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운영의지를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6(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5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3.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통일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발 등)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교육기본법

제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2018.9.11. 일부개정, 2018.9.14. 시행)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주간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교육 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수행 능력,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 대상자 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강당,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통일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전시와 체험 등에 필요한 공간 및 물품·장비를 보유할 것
 2. 통일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3. 해당 시설의 장 외에 운영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4. 기본계획의 기본원칙, 추진목표 및 방향 등에 적합한 교육운영 계획(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 ②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일관 전시 공간 및 물품·장비 개요서
 2. 통일관 운영계획(현황)서
 3. 통일관 교육운영 계획서
- ③ 법 제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④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은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정요건이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통일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그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통일교육 결과보고서에 전년도 통일교육 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
 3.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과 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실시
4. 통일교육 관련 연구학교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
5.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관련 자료 제출 협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 현장견학 비용
2. 통일 문화체험 비용
3.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4.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5. 그 밖에 통일교육 관련 조사, 연구, 자료개발 등 통일부장관이 체험 교육 및 강좌 개설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초·중등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현황과 통일에 대한 학생의 인식도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 현장견학 비용
2. 통일 문화체험 비용
3.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4.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제7조(통일교육협의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4.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I

II

III

IV

V

VI

- 제8조(통일교육위원) 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등 통일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통일교육부터 적용한다.

3 조례

구분	기관명	조례명	제·개정일 [공포일자]
지자체 (1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2017. 1. 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1.3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9.2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8.12.1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	2015.12.1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20. 9.24.
	경기도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11.12.
	강원도	강원도 통일교육·문화 활성화 조례	2016.12.30.
	충청남도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12.31.
	전라북도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16. 9.30.
	전라남도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7.11. 2.
	경상북도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8.12.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6. 5.13.
교육청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5.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20. 9.21.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 4. 4.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9.23.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7.12.29.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12.26.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20. 7.15.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3. 8.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2018.11. 9.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6. 6. 8.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16. 9.30.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1. 3.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2. 8.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21. 1.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6. 5.16.

2021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

